

주차료 감면 대상(제8조제3항 관련)

구분	감면 대상
주차료의 전액 감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탑승한 차량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유족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탑승한 차량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가 탑승한 차량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탑승한 차량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탑승한 차량 9.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 10.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11. 도, 도의회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회의·교육에 참석하는 차량 12. 의정활동을 위하여 방문한 시·도의원 또는 시·군·구의원 차량 13.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의 차량(언론기관의 로고를 부착한 차량에 한정함) 14. 청사 유지·보수 공사, 물품 납품을 위하여 출입이 필요한 차량 15.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명의자와 그 가족이 탑승한 차량 16. 기타 주차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되는 경우의 차량
주차료의 100분의 50 감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저공해 자동차(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종 저공해 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자동차, 이륜자동차 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

<비고>

1.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주차료 감면사유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2. 주차료 감면 대상 차량은 관련 증명서를 별도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차료의 전액 감면 제10호 및 제13호에 해당되는 차량은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료 면제신청서(이 경우 전산입력 또는 전자발행 방식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